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30. 정을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공제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¹⁾.

다만,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피공제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피공제자가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보호자등²⁾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1)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르면 “보호자등”을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도록(안 제2조제1호)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27..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도록 현행 유지를 위해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함(안 제2조제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가. ~ 라. (생략) <u><신설></u> 2. ~ 6. (생략)	제2조(정의) ----- ----- -----. 1. ----- ----- ----- -----. <u>다만, 마목의 경우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아니한다.</u>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교육기관</u> 2. ~ 6.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 ----- -----. <u><단서 삭제></u>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2. ~ 6. (개정안과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